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31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서삼석 · 신정훈 · 윤준병

김교홍 · 박용갑 · 박수현

이원택 · 강득구 · 이병진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조직법은 해양수산부의 직무로 해양정책과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과 해운과 항만을 포함한 해양자원과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 경찰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해양산업이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위기와 어촌인구소멸위기 대응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현안을 집중육성 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해양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임.

해양강국으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운과 조선 관련 사무를 통합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 및 수산 분야의 현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하기 위하여 해운과 조선 사무를 통합하고 복수차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해양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26조제2항, 제44조제1항).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에는”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해운”을 “조선·해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각부) ① (생 략)	제26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 음)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 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 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 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 부 · 보건복지부 · <u>국토교통부</u> 에 는 차관 2명을 둔다.	② ----- ----- ----- ----- ----- ----- ----- <u>국토교통부</u> · <u>해양수산부</u> 에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 <u>해운</u> · 항 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 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4조(해양수산부) ① ----- ----- ----- <u>조선</u> · <u>해운</u>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